<제 2 주제>
중재사례에 나타난 오보의 유형

이혜복 중재위원

I. 서언

언론의 자유와 언론의 책임은 항상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특히 언론이 지닌 책임은 중요한 두 가지 측면을 지니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 첫째는 개인에 대한 책임으로 언론이 부당하게 개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케 했을 때 져야 할 책임이요, 둘째는 특정의 개인이 아닌 사회일반, 즉 말하자면 공공에 대한 사회공기로서의 사회적 책임이 그것이다.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개인신상에 관한 내용을 공개해서 개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케 했을 때 마땅히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되지만 그것이 공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언론에 보도됐을 때 면책규정을 둔 것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 보호하여 사회공기로서의 막중한 책임을 다하게 하기 위한 것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언론매체가 명예훼손이나 프라이버시 침해 등으로 중재위에서 중재를 받게 되는 것은 명백히 사실과 다른 보도를 했을 경우에 국한된다. 사실과 다른 보도에는 전혀 터무니 없는 허보와 어떤 사유에서건 사실과 다른 오보일 경우 두 가지를 상정할 수 있는데, 오늘날 정상적인 언론 매체일 경우 무모하게 허보를 내는 예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이다. 따라서 문제는 오보에 있다고 봐야 되며 오보의 원인과 그 유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실제적으로 중재위원회에 신청된 사례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 볼까 한다. 우선 오보의 유형을 열거하기에 앞서 중재위원회에 접수, 처리된 지난 6 년여 동안의 중재신청처리현황부터 살펴보고 나서 대표적인 사례를 관찰하기로 한다.

Ⅱ. 언론중재처리현황

1981 년 3 월 31 일 언론중재위원회가 발족한 이후 1987 년 9 월까지 근 6 년 반 동안의 중재처리과정을 몇 개 측면에서 관찰해 봄으로써 중재사례에 나타난 오보의 유형을 분석하는데 기초적 자료가 될 것으로 본다.

1. 중재신청처리결과

지난 6 년 반 동안 중재위원회가 중재신청을 접수, 처리한 내용(표 1 참조)을 보면 중재신청은 모두 354 건으로 그 중 정정청구에 대해 관계 언론사와 합의된 것이 94 건(27%), 불성립이 123 건(35%), 취하가 119 건(34%), 기각 11 건(3%), 각하 5 건(2%)이었다. 즉 신청인과 언론사간에 정정보도를 하기로 합의를 본 사건 수 보다는 불성립과 취하의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 눈에 뜨인다. 불성립은 언론사 또는 신청인의 어느 한쪽의 불출석으로 중재가 성립되지 못한 경우나 양자가 출석했다 해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 결렬된 두 가지 경우가 포함된다. 중재위원회가 중재신청내용을 검토한 결과, 정정보도 이유가 없다고 판단, 신청이유가 없다고 보아 기각한 사건이 전체 신청건수의 3%(11 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점으로 봐서 대부분의 중재신청이 이유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5 건(2%)이 각하된 것은 정정보도 신청기간(분쟁된 공표가 있은 후 1 개월 이내, 피해자가 언론사에 직접 정정보도청구를 한 경우에는 청구한 날로부터 14 일 이내)을 넘겼기 때문에 신청조건이 상실됐기 때문인데, 그런 경우는 극소수이긴 하나 중재위원회의 기능이나 정정보도청구신청, 처리절차가 일반에 주지돼 있지 못한데 기인한 것으로 이점은 중재제도에 관한 홍보가 미흡한 구체적 사례로 지적될 수 있다.

〈표 1〉 중재신청 접수 및 처리결과

(1981. 3. 31~87. 9. 23)

구분 / 연도	합의	불성립	기각	각하	취하	신청건수
1981년	9(20%)	12(27%)	1(2%)	2(5%)	20(46%)	44(100%)
1982년	19(38%)	19(38%)		2(4%)	10(20%)	50(100%)
1983년	21(30%)	22(31%)	1(1%)	1(1%)	26(37%)	71(100%)
1984년	12(22%)	29(54%)	3(6%)		10(18%)	54(100%)
1985년	12(20%)	28(48%)	4(7%)		15(25%)	59(100%)
1986년	14(29%)	10(20%)	1(2%)		24(49%)	49(100%)
1987년	7(26%)	4(15%)	1(4%)		14(52%)	27(100%)
계	94(27%)	123(35%)	11(3%)	5(2%)	119(34%)	354(100%)

2. 언론침해의 유형

중재위원회에 접수된 정정보도신청건수 중 언론침해유형은 대부분이 명예훼손과 사생활의 침해(252 건, 71%)이고, 그 다음 많은 것이 신용권훼손(93 건 26%), 저작권 침해(9 건: 3%)의 순위로 나타나 있다. (표 2 참조)

〈표 2〉 침 해 유 형

(1981. 3. 31~1987. 9. 23)

유형 / 연도	명예 및 사생활	신용권(재산)	저 작 권	계
1981년	23(52%)	15(34%)	6(14%)	44(100%)
1982년	41(82%)	9(18%)		50(100%)
1983년	58(82%)	13(18%)		71(100%)
1984년	39(72%)	12(22%)	3(6%)	54(100%)
1985년	44(74%)	15(26%)		59(100%)
1986년	25(51%)	24(49%)		49(100%)
1987년	22(82%)	5(18%)		27(100%)
계	252(71%)	93(26%)	9(3%)	354(100%)

〈표 3〉 신 청 인 유 형

(1981. 3. 31~87. 9. 23)

유형 / 연도	개 인	일반단체	회 사	학 교	종교단체	종 친 회	공공기관 단 체	계
1981년	25 (57%)	11 (25%)		1 (2%)			7 (16%)	44 (100%)
1982년	32 (64%)	6 (12%)	8 (16%)	1 (2%)	2 (4%)		1 (2%)	50 (100%)
1983년	42 (60%)	10 (14%)	9 (13%)	1 (1%)	7 (10%)	1 (1%)	1 (1%)	71 (100%)
1984년	36 (67%)	3 (5%)	5 (9%)	1 (2%)	7 (13%)		2 (4%)	54 (100%)
1985년	33 (56%)	9 (15%)	13 (22%)	3 (5%)	1 (2%)			59 (100%)
1986년	22 (45%)	5 (10%)	22 (45%)					49 (100%)
1987년	15 (56%)	3 (11%)	8 (30%)				1 (4%)	27 (100%)
계	205 (60%)	47 (13%)	65 (18%)	7 (2%)	17 (5%)	1 (0.2%)	12 (3%)	354 (100%)

3. 중재신청인의 유형

중재신청의 유형은, 개인이 주체가 된 것이 으뜸으로(205 건, 60%) 절대 다수이고, 두번째가 회사 65 건(18%), 그 다음이 일반단체 47 건(13%), 종교단체 17 건(5%), 공공기관·단체 12 건(3%), 학교 7 건(2%), 종친회 1 건(0.2%)의 순이다. 일반적으로 특히

사회적 지위가 낮은 개인이나 무명단체 또 소기업의 중재신청이 월등하게 많은 점 (전체 신청건수의 91%)으로 봐서 오랜 시일과 많은 소송비용을 들여 언론사와 법정투쟁을 하기에는 힘에 부치는 소시민이나 소기업들이 언론으로부터 받은 부당한 피해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 바로 언론중재제도라는 제도적 장치라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다고 풀이할 수 있다. 그 반면,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경우 언론사와의 트러블을 중재제도를 통해 해결 지으려는 자세보다는 오히려 이를 기피하고 법정에서 해결하려는 경향이 짙다는 것은 매우 대조적인 점이다.

4. 중재대상매체

중재대상이 된 언론매체로는 중앙일간지가 단연 많아 145 건(41%), 그 다음이 지방일간지의 57 건(16%)인데 전체 중재신청건수 중 50% 이상을 일간신문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주목할만한 현상이다. 주간지 38 건(11%), 중앙방송 29 건(8%), 주간신문 28 건(8%), 월간지 27 건(8%), 통신 20 건(6%), 지방방송 7 건(2%), 월간신문 2 건, 기타 1 건의 순위이다.(연도별 내역은 표 4 참조)

〈표 4〉 매 체 유 형

(1981. 3. 31~87. 9. 23)

구분 / 연도	중앙지	지방지	통 신	중앙방송	지방방송	주간신문	월간신문	주간지	월간지	기 타	계
1981년	27	7	4	2		2		2			44
1982년	16	3	2	10	3	3		9	4		50
1983년	34	13	5	3	1	6	1	6	2		71
1984년	20	7	1	9	1	5		5	6		54
1985년	25	16	6	1		5	1	4	1		59
1986년	13	8		3	2	4		9	10		49
1987년	10	3	2	1		3		3	4	1	27
계	145 (41%)	57 (16%)	20 (6%)	29 (8%)	7 (2%)	28 (8%)	2 (0.5%)	38 (11%)	27 (8%)	1 (0.2%)	354 (100%)

〈표 5〉 불 성 립 사 유

(1981. 3. 31~87. 9. 23)

구분 / 연도	불성립건수	불출석으로 인한 불성립			합의결렬
		신청인불출석	피신청인불출석	쌍방불출석	
1981년	12	1	6		5
1982년	19	1	7	2	9
1983년	22		8		14
1984년	29	4	6	3	16
1985년	28	3		5	20
1986년	10	1		1	8
1987년	4				4
계	124 (100%)	10 (8 %)	27 (22%)	11 (9 %)	76 (61%)

5. 불성립사유

언론중재가 불성립된 경우는 모두 124 건으로 그 중 합의결렬로 인한 불성립이 76 건(61%)으로 불출석으로 인한 불성립 48 건(39%)보다 훨씬 많았다. 합의결렬은 글자 그대로 쌍방의 주장이 맞서 타협을 못 본 것으로 불출석으로 인한 불성립건수 중 피신청인(언론사)의 불출석이 전체 불성립건수의 22%, 쌍방 불출석이 11 건(9%), 신청인 불출석도 10 건(8%)이었다(표 5 참조) .

6. 취하사유

중재처리과정에서 불성립 다음으로 많은 것이 취하건수(119 건)인데, 취하의 경우 회유에 의한 취하가 55 건(46%)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자진취하 39 건(33%), 압력에 의한 취하가 25 건(21%)의 순위이다.

중재를 신청한 측이나 피신청인측 어느 일방이나 또는 쌍방의 불출석으로 인한 불성립과 많은 취하로 인해 중재를 통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예가 많은데(표 6 참조), 취하의 배경을 살펴보면 매우 주목할만한 점도 없지 않다. 회유취하 중에는 정정보도나 관련된 해명기사를 언론사측이 게재 약속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예가 30 건(전체 취하비율의 25%), 피신청인의 호의표시 또는 사과에 의해 취하한 경우도 25 건(21%)이나 있었다. 물론 자진 취하한 경우는 이미 언론사가 정정보도를 했기 때문에 신청사유가 해소된 경우(20 건. 16.8%)도 있고 신청인이 개인사정으로 취하한 경우(19 건 15.9%)도 있다. 그러나 압력취하는 유관기관 또는 사직 당국을 피신청인이 동원함으로써 취하한 경우가 25 건(21%)이나 돼 언론의 보이지 않는 압력이 작용되고 있다는 느낌이 짙다.

〈표 6〉 취 하 사 유

(1981. 3. 31~87. 9. 23)

취하사유 / 연도	자진취하		압력취하	회유취하		계
	취하전 정정보도로 인하여	신청인 개인상의 이유로 인하여	유관기관, 사직당국을 동원함으로써	호의표시나 사과에 의하여	정정보도나 기사게재를 약속함으로써	
1981년	1(5%)	3(15%)	15(75%)		1(5%)	20
1982년		1(10%)			9(90%)	10
1983년	2(8%)	1(4%)	6(23%)	6(23%)	11(42%)	26
1984년	2(20%)	1(10%)		3(30%)	4(40%)	10
1985년	5(33%)	1(7%)	3(20%)	4(27%)	2(13%)	15
1986년	9(38%)	8(33%)	1(4%)	4(17%)	2(8%)	24
1987년	1(7%)	4(29%)		8(57%)	1(7%)	14
계	20(17%)	19(16%)	25(21%)	25(21%)	30(25%)	119(100%)

〈표 7〉 언론사의 중재기일 출석률

(1981. 3. 31~87. 9. 23)

구분 / 연도	중재대상	출석요구	출 석	비 고
1981년	44	33	18 (54.4%)	기각 1 건, 각하 2 건은 출석요구를 하지 않았으며, 8 건은 중재기일전 취하로 출석요구가 취소
1982년	50	48	35 (72.9%)	각하 2 건은 출석요구를 하지 않았음.
1983년	71	64	46 (71.9%)	취하 6 건, 각하 1 건은 출석요구를 하지 않았음.
1984년	54	51	38 (74.5%)	기각 3 건은 출석요구를 하지 않았음.
1985년	59	55	37 (67%)	기각 4 건은 출석요구를 하지 않았음.
1986년	49	44	29 (66%)	기각 1 건, 취하 4 건은 출석요구를 하지 않았음.
1987년	27	14	14 (100%)	취하13건은 출석요구를 하지 않았음.
계	354	309	217 (70%)	

7. 중재기일 출석률

중재위 발족이후 지난 6 년 6 개월 동안의 피신청인인 언론사들의 출석률은 1981 년에는 54.5%에 불과했으나 올해(87 년) 들어서는 100% 출석률을 나타내 그간의 평균출석률 70%(출석요구 309 건에 217 건 출석)를 크게 웃돌았다. 중재대상건수(354 건)와 출석요구건수(309 건)사이의 차이는 중재기일 이전에 신청인이 취하를 했거나, 각하 또는 기각의 경우가 생겨 출석을 요구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표 7 참조).올해 들어 출석률이 현저하게 높아졌지만 언론사의 경우 불출석의 경우가 있다는 것은 중재제도에 대한 기피현상과 더불어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으로 지적될 수 있어 이점 언론사의 자성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8. 법원제소건수

중재신청된 사례 중 불성립된 124 건 중 법원에 제소된 것은 38 건(불성립 건수의 30% 남짓)인데, 그 중에 취하가 16 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기각 11 건, 인용 7 건, 화해 3 건, 계류 1 건으로 처리됐다(표 8 참조). 항소심까지 간 건수는 11 건으로, 신청인의 항소가 8 건, 피신청인의 항소가 3 건, 항소심 결과는 기각이 5 건, 변경이 2 건, 취하가 4 건이었다(표 9 참조).

〈표 8〉 법 원 제 소 현 황(1 심)

연도는 중재위원회 접수된 사건기준

구분 / 연도	제소건수	인 용	기 각	화 해	취 하	계 류
1981년	4		2	2		
1982년	3	2	1			
1983년	7	4	2		1	
1984년	8		4		4	
1985년	12		2	1	9	
1986년	2	1			1	
1987년	2				1	1
계	38	7	11	3	16	1

〈표 9〉 법 원 제 소 현 황(항소심)

구분 / 연도	건 수			결 과			
	신청인항소	피신청인항소	기 각	취 소	변 경	취 하	계 류
1982년	1	1			1	1	
1983년	1	1			1	1	
1984년	4		2			2	
1985년	2		2				
1986년		1	1				
계	8	3	5		2	4	

III. 오보의 유형

1. 오보의 사유

오보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데스크나 편집, 교정담당자의 기술적 실수는 논외로 하고 우선 문제되는 것은 취재기자의 태만을 들 수 있다. 마감시간에 쫓겨 사건피해자와 가해자의 성명을 뒤바꿔 쓰는 단순한 실수로부터 취재부족인 상태에서 추리력을 발동하여 사실에 충실치 못한 기사를 쓴 경우, 오보는 나게 마련이다.뉴스소스(정보원)의 부정확한 자료를 토대로 기사를 작성했을 때 본의 아니게 오보를 내는 수도 있고, 기자의 주관이 삽입돼 편파적인 보도를 함으로써 오보를 내는 수도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객관적 사실보도에 충실해야 될 기자 본연의 보도자세를 크게 일탈한 가장 경계해야 할 점이다.
몇 가지 구체적 사례를 다음에 예거한다.

(1) 취재원의 오류
수사관계기관이 관련된 사건을 보도함에 있어 관련경관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보도하고 사건관련 다른 한쪽의 주장을 들어 보지도 않은 채 기사화해서 문제된 강원일보 1984 년 6 월 11 일자 제 11 면에 게재됐던『지서기물파괴 · 경관폭행, 대학생 등 셋 입건』제하의 기사는 뉴스소스의 오류를 여과, 판별하지 못한 오보로, 관련 대학생들이 정정보도를 요구 중재신청에 이르러 강원일보는 결국 속보형식의 정정보도(1984 년 8 월 27 일자 지면)를 냈다. 기사내용 중「경찰에 대해 폭행을 하고 의암지서안의 유리창과 기물을 부수고 근무경관을 죽인다고 협박했다」는 대목에 대해 대학생들은「오히려 동료학생이 동문의 추모행사에 참가했다 입술을 다쳐 차량편의를 경찰관에게 요청하자 자세가 건방지다고 지서로 끌고 가 수갑을 채우고 MI6 소총으로 구타 부상케 했다고 주장, 대학생들에 대해서는

기자가 묻지 않은 채 경찰관 주장만 들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건발생지는 의암지서요, 그것을 보고 받고 기자에게 보고내용이 알려진 곳은 상급 관서인 춘천서였다. 하부기관에서 자신들이 문책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자진 보고할 리가 없다고 볼 때 경찰보고자체가 사건내용 사실과는 다를 수도 있을 것이니 마땅히 다른 한 쪽(대학생들)도 만나봤어야 했을 것이다. 정보원에서 얻은 부정확한 내용을 분석검토, 보충취재함이 없이 바로 지상에 공표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좋은 실례로 지적될 수 있다.

(2) 기자의 태만
기자는 어떤 뉴스를 보도할 때는 항상 사실을 확인하는 적극적인 취재자세가 필요하고 안일한 보도태도는 오보를 내는 근본원인을 이룬다는 점을 명심해야 될 것이다. 그와 같은 사건 실례로 부산일보 1985 년 1 월 19 일자 10 면에 게재됐던 『술 마시고 길서 자다 대학생 1 명 숨져』 제하의 기사를 들 수 있다. 기사요점은 「산화감시원으로 아르바이트하던 진주 경상대 축산과 1 년 정종근군(18)이 17 일 밤 10 시쯤 친구와 같이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 다리 밑으로 굴러 떨어져 잠자다 동사했다」는 것인데, 「수사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사인을 임의로 단정보도 한 것은 잘못이니 정정하라」는 유족들의 항의와 중재신청으로 『동사 처리된 대학생 교통사고로 재수사』 제하의 정정보도(1985 년 2 월 22 일)를 부산일보는 게재했다. 문제는 기자가 변사자의 사인을 너무 가볍게 단정보도한 데 오보의 원인이 있고 그것이 경찰보고를 그대로 기사화한 것인지? 아니면 현장취재가 아닌 전문보도 임이 틀림없다고 생각되는 것이 변사자의 성명 (정종인을 정종근으로 보도), 연령(20 세를 18 세로 보도), 변사날짜(16 일밤인 것을 17 일로 보도)가 모두 틀린 것으로 봐서 현장취재가 아닌 것은 확실했다.
현장확인이 어려웠다면 사인만이라도「경찰보고에 따르면‥‥」이라는 전제를 두고 보도했어야 옳지, 앉아서 기사를 쓰는 태만한 취재자세는 오보를 내기 십상으로 특히 사건기사의 경우 현장취재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3) 기자의 보도자세 결함
오보는 왕왕이 기자의 편파적인 보도자세에서 비롯될 수 있다. 어디까지나 공정 무사한 객관적 관점에서 보도하는 자세를 견지해야지 주관을 담은 보도태도는 불가피 오보를 낼 수 밖에 없다. 동아일보 1984 년 8 월 27 일자 10 면에 게재된『윤화입원 서적판매원 「치료소홀로 불구」 진정』제하의 기사는 편파적인 보도의 한 유형이다. 기사의 핵심은 「서적 외판원 차정순(34) 이 교통사고로 무릎을 다쳐 서산읍 조모외과에 입원했는데 의사 조씨는 한번도 치료를 않고 간호원이 상처부위를 꿰매고 X 레이를 찍은 후 부목을 한 다음 경과가 좋다고 퇴원 시켰으나 서울 가톨릭의대 강남성모병원에서 정밀진단을 해 보니 상처가 전혀 치유안돼 재수술을 해도 목발신세를 못 면하게 돼서 조의사를 검찰에 고소했다」는 내용이었다. 조의사는 고소인 차씨의 일방적 주장만 받아들여 보도함으로써 명예를 훼손케 했다고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중재신청에 따라 결국 동아일보는 속보형식의 정정보도(1984 년 10 월 23 일자)를 냈는데 고소사건의 경우 고소인의 주장만을 중심으로 보도하고 피고소인측 주장을 도외시하는 주관적인 보도는 결과적으로 편파적인 보도가 될 수 밖에 없고, 사실과는 거리가 먼 오보를 낼 가능성이 짙기 때문에 고소사건은 원칙적으로 기사취급에 있어 신중을 기하는 것이 상식이다.

2. 명예훼손 및 사생활침해요인

명예훼손사건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오보를 내지 말아야 할 것이다. 만일 오보를 냈을 경우라면 성의껏 즉각 정정함으로써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명예를 회복토록 하는 것이 언론 본연의 자세일 것이다. 물론 정정기사를 냈다고 해도 명예훼손사건으로 발전할 수도 있기는 하다. 명예훼손과 아울러 프라이버시 침해 즉 언론이 사생활침해로 그 책임추궁을 받는 예가 앞으로는 늘어날 것은 외국의 경우로 봐서 자연적인 추세일 것 같다. 부녀폭행범에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신원을 사려 없이 공개해서 피해자에게 이중의 고통을 주는 예, 인터뷰취재에 있어 또는 요즘 유행하는「수기」형식의 보도에 있어 그

내용을 언론사에서 조작 · 확대해서 흥미본위의 사실 아닌 왜곡보도로 명예훼손 또는 사생활침해 사례가 종종 나타나고 있는 것은 언론정도에서 벗어난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경향으로 마땅히 배제돼야 할 점이다.

(1) 범죄피해자의 신원공개
최근 특히 강도범 등 흉악범들이 부녀폭행까지를 아울러 저지르는 천인공노할 범죄수법을 쓰는 예가 빈번한 데 그런 경우 그 피해부녀자의 신원이 언론매체에 의해 공개보도될 경우 피해를 입은 부녀자 본인들은 물론 그 가족들의 명예까지 훼손하는 결과를 빚게 된다. 특히 부녀폭행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언론의 금기사항으로 상식화돼 있다. 그럼에도 간혹 언론사측의 부주의로 그와 같은 과오를 범하는 사례가 있어 중재신청 된 사건이 있었다. 부산일보 1981 년 4 월 18 일자 4 면에 게제됐던 난행 당한 여고생 4 층 옥상에서 투신』 제하의 기사로 그 기사에는 난행 당한 장소와 시일 그리고 여고생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으나 18 세라는 나이와 S 병원에 입원한 사실을 밝혔고, 경남신문의 경우는 피해 여학생의 학교소재지와 학년, 그리고 피해자의 성까지 밝히면서 「욕을 당한 후 이를 비관, 4 층 옥상에서 뛰어 내려 자살을 기도, 중태에 빠졌다」고 보도하면서 입원한 병원이름까지 밝혔다. 물론 두 신문은 경찰조사내용을 토대로 기사화한 것이었다. 피해학생의 가족이 관련신문사에 항의, 1 만 기사로 정정은 했으나 미흡하다고 불만을 표시, 「허위보도로 인해 주위 사람들과 학우들은 피해학생이 욕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으니 사실대로 순결함을 밝혀 크게 다시 정정, 어린 여학생의 오명을 씻어 달라」고 중재신청을 냈다. 이에 부산일보는 정정보도를 했다며 재정정을 거부했고, 경남신문은 중재기일에는 불출석, 불성립 됐으나 범인이 검거되자 두 신문 모두 속보형식으로 「여고생의 순결」을 밝히기는 했다.
성폭행관계보도에 있어서는 마땅히 피해여성의 신원이 알려질 수 있는 어떤 자료도 공개보도 않는 것이 상식인 만큼, 아무리 사실에 바탕을 둔 보도라도 그것이 보도돼서는 안될 내용이 보도됐다면, 그 역시 분명히 오보의 유형에 속한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2) 수기조작
최근 각 주간지, 월간지가 다투어 이른바 「수기」 게재에 열을 올리고 있고, 특히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됐던 인물의 수기를 경쟁적으로 싣는 가운데 「이후락 씨 인터뷰 사건」처럼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예마저 있었다. 사실 「인터뷰」한 내용을 사실 그대로 실어도 때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도 있겠으나 인터뷰 한 내용과는 전혀 엉뚱한 내용이 확대 윤색돼서 흥미위주의 조작수기로 둔갑해 버리는 데 문제가 있다. 그와 같은 실례로 앞서 모 월간지에 게재된 고 박종철군 여자친구 대학생의 수기조작문제가 중재신청에서 합의를 못보고 사건이 법정으로 옮아간 예도 있지만 인터뷰내용 개작보도로 정정보도와 사과문게재를 요구, 중재신청 됐던 사례로 여성자신 1984 년 2 월 호 학원사 발행의 『택시 안의·남자들, 달리는 욕망 뒤에 숨은 두 얼굴의 사나이들』이라는 제하의 르포기사를 꼽을 수 있다. 문제됐던 르포기사는 3 명의 여성 택시운전사들(H 씨 외 2 명) 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 수기형식, 남자승객의 치부를 파헤치면서 인터뷰에 응했던 여자운전사의 사진까지 게재해 가명을 쓴 이유가 소멸된 셈이었다. 이에 인터뷰에 응했던 여자운전사는 자신들이 말한 내용과 너무나 동떨어진 내용을 일방적으로 왜곡, 과장하여 마치 여자 운전사들이 희롱의 대상이 되고 있는 양 묘사됐고, 사진까지 공개됐으니 독자들의 오해와 함께 명예를 심히 훼손당했다고 정정보도와 사과문 게재를 요구했다. 결국 법정으로까지 문제가 번져, 여성자신 1984 년 3 월 호에 정정기사를 내고도 100 만원의 위자료를 지불하는 선에서 해결됐지만 하지도 않은 말을 조작 보도하거나 가필 과장하는 보도자세는 도의적 차원을 넘어 민사책임까지 면하기 어렵다는 게 이미 사례로 남게 됐으니 수기나 인터뷰기사 취급은 매우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다
(3) 비진실왜곡보도
유명인사의 사인에 관한 보도에 있어 확인 안 된 사실을 단정 보도한 것이 문제된 예로 고 황윤석 판사(최초의 여판사)의 사인과 관련해 여원 1984 년 1 월 호에 실린『한국 최초의 여판사 황윤석, 그의 의문의 죽음』제하의 글이 사자의 명예훼손으로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중재신청을 고 황윤석 판사 사인에 대한 기사해명』제하의 상세한 해명정정을 함으로써

문제는 해결된 바 있다. 이 사건과는 좀 다르지만 여성동아 1982 년 4 월호부터 6 월호에 걸쳐 연재됐던「평전-아!」 전혜린 천재의 불꽃놀이」가 사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유족들이 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신청한 예도 있다. 문제됐던 대목은 여성동아 1982 년 6 월호(「평전-아!」) 전혜린
③ 불꽃놀이, 수수께끼의 죽음))에 번역문학가 이덕희씨가 집필한 평전에서 망인 전씨의 죽음에 관한 부분을 기술함에 있어 유족의 동의없이 유족의 사진을 게재 평전 내용의 사실을 왜곡, 공익과는 관계없는 사자의 사생활을 억측과 고집으로 평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족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고 주장, 이에 대한 사과문과 더불어 사자의 죽음이 자살이 아니라는 내용을 게재하라고 요구했다. 결국 중재결과 여성동아는 1982 년 7 월호에 평전를 휴재하고, 8 월호에 전혜린 평전의 최종회를 제 3 의 필자로 하여금 「전혜린 이전」과 함께 게재함으로써 합의로 문제는 수습됐지만 특히 「내가 축하하고 부러워했던 40 알의 세코날이 바로 그녀를 죽인 '원흉'이었다」는 대목(여성동아 1982 년 6 월호, 전혜린 평전 중 한 대목)은 세코날의 수를 밝히는 것 자체도 보도 상식상 문제이지만 마치 자살을 찬미하고, 전혜린의 자살이 세코날 복용에 의한 것으로 일반 독자들이 인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됐던 것이다. 프라이버시 침해의 예로는 선데이 서울 서울신문사발행 1984 년 10 월 14 일자 제 31 면 광고란에 게재됐던 『유능한 연기인이 될 수 있는 지름길』, 『신인 남녀 TV 탤런트 영화연극배우 CF 모델 선발』 제하「예림 연기실」 명의의 광고를 들 수 있다. 광고우측상반에 카메라를 메고 촬영포즈를 취하고 있는 선명한 실물사진은 한눈에 그 주인공이 당시 KBS 보도본부 취재 기자였던 장병욱 씨의 사진임을 알아볼 수 있어 본인의 사전양해 없는 무단광고삽입으로 뚜렷이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었다. 선데이 서울측의 불출석으로 중재는 불성립이었으나, 1984 년 10 월 14 일자 광고지면에 사과문과 곁들여 문제된 사진을 재록, 해결을 보았다.
(4) 단순오보
때로는 본의 아닌 단순한 보도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케 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다.그 좋은 예가 중앙일보 1985 년 4 월 16 일자 6 면에 게재됐던 『자기 회사 금고 털고 도난위장』,30 대 경리사원 구속』 제하의 기사로 「수원발연합」으로 된 기사내용 인즉 자기회사 사무실 금고를 턴 안광엽(38 수원시 거주)에게 특수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는 줄거리로, 동방유량 수원영업소에 근무하는 안씨가 사무실 창문을 깨고 들어가 금고 속의 현금 3 백 5 십 7 만 6 천원, 당좌수표 2 천 4 백 5 십 4 만 7 천원 등 총 4 천 7 백여 만원을 훔친 뒤 도둑이 털어간 것으로 위장, 정상근무를 해 왔다는 것. 그러나 문제는 수원발 연합통신의 잘못된 기사를 중앙일보가 전재한 것으로 실제 범인은 안광엽씨가 아닌 「차영준」이었다. 통신의 보도를 전재한 데서 온 단순오보이긴 하나 중앙일보는 명예훼손을 당한 안씨의 중재신청으로 정정보도를 냄으로써 문제는 해결됐다.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엉뚱한 사람을 범인으로 잘못 공개보도한 원인이 단순히 부정확한 통신기사를 전재한 데 있었지만 타인의 명예를 심히 훼손한 것만은 엄연한 사실이었다.

3. 신용권 저해요인

오보가 발생할 경우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는 수도 있겠지만, 기업이나 단체의 신용권이 저해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 경우에 해당되는 사례로서 대표적인 것들로는, 특허권에 관한 보도에서 기자가 정확히 조사하지 않고 보도함으로써 오보가 발생하는 경우, 특정기업이나 상품에 대한 편파보도 함으로써 상대쪽에 불이익을 가져다 주는 경우, 관계기관의 발표를 잘못 인용해 피해를 주는 경우 등이 있다.
(1) 특허관계오보
특허권을 둘러싼 이해당사자 중 일방의 주장만을 보도하여 명예를 훼손케 했으니 정정보도 하라는 중재신청사례로 동아일보 1982 년 7 월 16 일자 10 면에 게재된 『얌체상혼에 우는 특허권』 제하의 플라스틱사출금형 합금 개발 특허권을 둘러싼 시비가 있었다. 기사의 핵심은 「4 년간 각고 끝에 플라스틱제품을 손쉽고 정교하게 만들어 낼 수 있는 사출금형용 합금을 개발, 특허권까지 얻었으나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다른 업자(손성기 씨)가 합금비법을 아는 기술자를 빼돌려 물건을 대량생산, 덤핑까지 하는 바람에 특허권자(이한중 씨)가

손해를 보고 재산이 탕진됐다」는 것으로 손씨가 허위보도로 크게 명예가 훼손됐으니 정정보도 하라는 중재신청을 냈으나 피신청인의 불출석으로 불성립이 되었는데, 손씨는 이씨의 특허내용은 지금까지 이미 알려져 온 제조방법을 종합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 정정보도를 요구했으나 피신청인측 불출석으로 불성립에 끝났다. 손씨와 이씨 사이에는 특허등록일로부터 20 여건의 민 · 형사소송, 진정 등이 겹치고 있는 복잡한 분쟁관계에 있는 사건이었던 만큼 사건의 진실을 파악하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이와같은 특허품분쟁의 경우 자칫 그것을 기사화 할 경우, 특히 어느 일방에 치우친 단정적인 보도를 하는 것은 매우 위험부담이 크고 오보를 낼 소지가 많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야 할 유형이라고 하겠다.

(2) 특정상품에 대한 편파보도

특정상품에 대한 편파보도로 피해를 입었다는 상인측으로부터 정정보도청구신청을 중재위원회에 낸 사건 예로는 충청일보 1985 년 3 월 16 일자 7 면에 게재된 『행정장비구입에 문제점』, 『특정제품 한정 성능 뒤떨어져 큰 불편』 제하의 기사로 보도핵심은 「조달청과의 구입계약에 따라 진천군이 구입한 L 회사제품의 복사기가 두꺼운 서류의 복사가 어렵고 축소복사도 불가능해 그 성능과 기능이 기존복사기에 크게 못 미친다는 것」으로 「행정사무에 큰 지장을 주고 있는데도 다시 8 대의 복사기를 L 회사에서 구매토록 예산이 편성돼 있어 시정이 요구된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주식회사 라이커(대표 김동석)에서 「국내 생산 복사기 제조회사로는 영문 이니셜이 L 로 표시되는 회사는 '라이커'와 '롯데 산업'뿐이나 기사에 보도된 기종이 '라이커' 제품임을 알 수 있도록 특정되었고, 기사내용 또한 사실무근이며, 경쟁업체 측의 터무니없는 주장만 무분별하게 인용보도 함으로써 영업상 큰 손해를 주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나 쌍방 모두 중재일에 불출석, 불성립으로 끝났는데, 이처럼 특정상품을 지칭해서 꼬집어 보도하는 것은 관계업체 간의 이해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인 만큼 역시 자칫 오보가 날 소지가 많기 때문에 가볍게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보도자세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본다. 특정상품에 대한 편파보도라고 해서 중재신청을 해왔던 사례로는 MBC-TV 가 1985 년 3 월 15 일 7 시「여기는 MBC」 뉴스시간에 보도한 택시미터기관계 보도내용을 들 수 있다. 보도요지는 「종래 요금만을 체크 할 수 있던 기계식 택시미터기를 크게 개선한 컴퓨터택시미터기를 '서울미터산업사' 에서 개발했는데, 이 미터기는 택시의 주행거리, 운행속도와 수입 등 차량운행 상황을 종합체크 할 수 있어 장차 실시될 운전기사월급제와 택시요금, 시간, 거리병산 실시에 결정적 도움을 주게 됐다」는 것

그러나 그와 같은 컴퓨터택시미터기는 이미 신청인회사(광전실업 대표 김광세)가 국내최초로 개발 해외수출까지 하고 있다고 주장, MBC 가 특정회사제품만을 선전하는 결과를 빚어 간접적인 피해를 주었으니 정정보도 하라는 요구였다. 중재결과 피신청인은 차후 기회있을 때 해명해 주겠다고 제의, 결국 중재는 불성립으로 끝났다. 대개 특정상품에 대한 편파보도 시정요구는 경제적 이해가 엇갈리는 복잡한 문제인 만큼 간단하게 해결이 안되는 예가 많아 중재는 불성립으로 끝난 예가 많았다.

(3) 관계기관의 오류와 기자의 오인용

어떤 사실에 대한 관계기관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잘못 발표하거나 관계기관의 발표 자료를 기자들이 잘못 인용할 경우 선의의 제 3 자의 신용권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 불의의 경제적 손실을 끼치는 수가 없지 않은데, 이런 종류의 보도는 그 경위야 어떻든 신용권을 저해하는 오보의 유형에 속한다고 보아야 될 것이다. 그러한 유형이 1986 년 5 월 서울의 일간지와 방송이 거의 비슷하게 보도했던 시중에 유통되는 포장지에서 발암성 형광물질이 검출됐다는 서울시당국 발표내용 보도였다. 당시 한국일보는 『음식점 위생종이의 발암물질』, 『숟가락 포장지서도 형광표백제 다량 검출』, 10 개 업체 제조정지』 제하의 기사(5 월 11 일자 11 면)를 실었고, 조선일보도 『시중냅킨 12%에 발암물질 보환연』, 『적발 8 개사 제조정지처분』제하의 기사(5 월 11 일자 11 면)를 실으면서 적발된 8 개 회사이름을 밝혔고, 경향신문은 『발암냅킨 · 포장지 양산』, 『 8 개 업체 적발형광물질 검출』 제하의 기사(5 월 12 일자 11 면)를 실었다. 중앙일보 역시 『9 개 식품 포장지 발암성물질 검출』 제하 기사(5 월 12 일자 11 면)를 실었다. 매일경제신문(5 월 15 일자 10 면)과 MBC-TV(5 월 12 일 7 시 뉴스)도 비슷한 내용의 보도를 해 전기 5 개 일간신문과 MBC 를 상대로 한성실업

(식품포장지 제조업체 대표 문병주)이 오보라고 정정보도요구, 중재신청을 냈다. 그러나 신청인은 서울시에서 신청인 회사 제품이 보도내용과 다르다는 해명을 하여 주기로 하였다고, 중재기일 중에 중재신청을 취하했다. 과연 신청인의 주장대로 기사취재가 잘못됐던 것인지 또는 당국의 발표에 오류가 있었던 것인지는 중재신청이 취하됐기 때문에 확인된 바 없으나 신청인이 그 사실을 보도한 모든 언론 매체들을 대상으로 오보정정 요구중재신청을 했던 것으로 봐서 전혀 터무니없는 신청이었던 것으로 단정하기엔 좀 납득이 안 간다고 볼 수 있는 사례였다.
부산 일보 1986 년 7 월 31 일자 11 면에 게재됐던『방부제 바른 유해 쥐치포 양산』 제하의 기사는 쥐치포에 어린이의 성장을 억제하고 소화기 순환기 질환을 유발하는 아황산염류(Na2S03)가 다량 함유돼 있는 것이 검찰수사로 밝혀져 허용기준치 5~20 배까지 아황산염류를 사용한 업자들(대왕물산 대표 한종무, 삼부식품 대표 황필성, 영남식품 대표 김함주)을 검찰이 구속했다고 보도했는데 부산시 건포류 제조협회 회장(김대조)이 이와 같은 기사로 쥐치포의 판매량이 격감, 조업중단, 휴·폐업사태에 직면케 됐으니 과장보도를 정정하도록 중재신청을 했다. 결국 부산 일보 1986 년 9 월 5 일자에 해명기사가 보도됨으로써 중재신청은 취하되었는데, 문제는 일부 불량업자들의 비행이 전체 쥐치포 제조업자들의 공통된 소행인 양 과장보도 됨으로써 선의의 제 3 자의 신용권을 훼손하는 결과를 빚었다고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였다. 이점 당국도 그와 같은 사건을 발표할 때에는 일부 국한된 불량업자의 소행임을 명시해야 될 것이고, 취재기자 역시 쥐치포 전체가 불량식품인 양 확대 해석할 소지가 있는 표현은 피하도록 하는 것이 옳았다고 본다.

Ⅳ. 결언

이제 중재사례에 나타난 오보의 유형을 살펴보면서 중재신청을 통해 나타난 사례보다 더 많은 언론침해사례가 있을 것임에도 언론중재제도의 존재와 신청절차를 몰라 언론사에 피해복구를 요구하고 나서지 못하는 법적 대항능력이 약한 소시민 또는 소기업주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됐다.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언론사에 대해 위축되기 쉬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나아가 언론 본연의 자세확립을 방조하는 역할까지도 언론중재활동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고 볼 때 언론중재제도를 강화발전 시키자면 중재제도가 있음을 국민일반에게 폭넓게 알려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면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 보성전문 상과.
- 서울신문 사회부장. 동아일보 편집부국장, KBS 해설주간, 동 연수원장 역임.
- 현재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